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5~34
----------	---------

제출연월일	2005. 6.
제출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조성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2조).
-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3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